

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. 11. 30 선고 2020가단249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,863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정읍시 D 대 500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50㎡ 지상 정화조 및 기타 잡동사니를 철거하고, 원고에게 위 (가)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2,940원 및 2021. 4. 26.부터 위 (가)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40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사건 토지는 2013. 5. 15.부터 원고의 소유였는데,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 중 약 50㎡의 면적에 피고가 컨테이너 등을 적치하여 점유하고 있었고, 피고는 2021. 10. 12. 위 지상물의 철거 또는 수거를 완료하였다(을 제5호증)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, 2013. 5. 15.부터 2021. 4. 25.까지의 부당이득금 222,94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지급하였으므로(을 제4호증), 피고는 원고에게 2021. 4. 26.부터 2021. 10. 12.까지의 부당이득금 18,863원(40,500원 × 170/365일)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2021. 6. 14. 감정서 참조).

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었던 정화조 및 잡동사니의 철거 등을 구하였으나, 피고가 그 철거 등을 완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판사 허윤범